서울특별시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경 과

가. 발 의 자 : 허 훈 의원(찬성자:14명)

나. 의안번호 : 제 3158 호

다. 발의일자 : 2025. 10. 17.

라. 회부일자 : 2025. 10. 23.

2. 제안이유

○ 아동 유괴 및 유인 사건으로 전국민적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발생한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사건 1,084건 중 60% 넘는 사건이 수도권에서 일어난 것으로 확인됨.

○ 현행 조례는 어린이 안전 보장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음.

○ 이에 시장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가. 시장이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.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원안(비용추계서) 참조

다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25. 10. 28.~11. 1.) 결과 :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시장이 현행 조례 제4조[1]에 따라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 있으나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조항으로 신설함으로써 어린이 안전을 보다 더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임.

[표] 개정안 주요내용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5조의2(어린이 안전교육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 이 경우 어린이가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 1.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2. 실종과 유괴 예방·방지 교육 3. 약물의 오·남용 예방 교육 4. 화재, 가스폭발,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 5. 교통안전 교육 6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

○ 어린이들은 사회 공동체의 기초 구성원으로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을 갖출 때까지 적절한 보호 아래 있어야 하기에,

---

1) **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**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보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2. 어린이 안전의 분야별 시책 및 지원방안
3.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별 계획
4.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
5.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
6.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○ 「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[2]에 따라 시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어린이 안전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할 책무가 있음.

○ 본 개정안은 그 일환으로 시장이 어린이가 소속된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되며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.

○ 특히, 안 제5조의2 각 호에 제시하고 있는 교육내용인 성폭력, 아동학대, 실종 및 유괴, 약물 오·남용, 화재, 가스폭발, 자연재난, 교통안전 등은 일단 발생하면 어린이의 신체 또는 정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위험 요소로서 사전 예방교육의 중요성이 매우 큰 영역이라 할 수 있음.

○ 참고로, 시는 이미 매년 수립하는 '서울시 어린이안전 시행계획'을 통해 교통안전, 식중독 예방, 재난대비 등 어린이 안전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파악됨.

---

2) **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임을 지며,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 또는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교육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,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에 따라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.